

특정감사

# 감사 보고서

- 지적기사 관련 마을회관 신축공사 특정감사 -

2024. 4.



해 남 군  
(기 획 실)

# ○○ ♣♣ 마을회관 신축공사 감사결과

## I 감사개요

- (감사배경) ○○ ♣♣ 마을회관 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업무추진 과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반성하고 재발방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감사기간) 2024. 3. 14. ~ 3. 27.
- (감사인원) 기획실장 외 2명
- (감사중점) ○○ ♣♣ 마을회관 신축공사 업무추진 전반
  - 지방보조금법,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사항 점검
  -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지침 미이행 여부 점검

## II 감사 결과

### 1. 총평

- ♣♣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적정 추진에 따른 지적기사와 관련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 ◆◆◆◆팀에서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회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 준공당시 담당자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직원으로 업무의 이해가 부족했으며 업무 관련 법률, 지침 등 검토 없는 답습 행정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팀장급 이상의 지도·감독 또한 소홀하였다.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중간에 마을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보조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담당공무원이 기 지정된 감독공무원이 있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 당시 같은팀 기술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다. 또한 법령과 지침에 관내로 제한하여 계약하라고 명기되었으나 확인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감독업무 소홀로 인해 준공검사 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별도의 감액 또는 정산없이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지침상 담당부서에서 계약서류를 검토하는 시기는 청구서를 받은 이후가 되므로 위 지적사항 중 계약업체 관내업체 계약, 대표자 변경 등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침 등을 보완하여 단계별 검토가 이루어지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2. 지적사항 총괄표

-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
  - 신분상(주의) 처분: 1건(3명)

(단위: 건, 원, 명)

| 총계       | 신분상처분     |    |           | 행정상 처분(건) |           |            |    |    |    |    |    | 재정상<br>(금액) |
|----------|-----------|----|-----------|-----------|-----------|------------|----|----|----|----|----|-------------|
|          | 합계<br>(명) | 징계 | 주의<br>(명) | 합계        | 시정        |            | 주의 | 개선 | 권고 | 통보 | 경고 |             |
|          |           |    |           |           | 재정상<br>처분 | 재정상<br>처분외 |    |    |    |    |    |             |
| 5<br>(3) | -<br>(3)  | -  | -<br>(3)  | 5         | 1         | -          | 3  | 1  | -  | -  | -  | 7,235,100   |

○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소홀

가. 보조사업 변경사항 미승인

보조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관련법 및 사업추진지침에 따라 담당부서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보조사업자가 ◇◇◇에서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 변경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사항: 주의, 개선

- 보조사업 추진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에 따라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하기 바람(주의)
- 보조사업자의 계약 단계부터 변경 준공까지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등을 통한 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나. 검사 및 감독공무원 업무 소홀

업무의 적정한 집행과 원활한 검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는 감독 업무를 수행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문으로 명확히 감독을 지정했어야 하나, 별도의 감독공무원 지정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정된 준공검사 공무원이 아닌 자가 준공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사항: 주의

-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예산관리 품질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시기 바람며 부득이 준공검사 공무원을 교체할 경우 공문으로 승인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한입찰 제한기준 미준수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지침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계약체결에 대한 확인이 소홀했다.

▶ **조치사항: 주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 지침을 준수해 관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조사업 정산업무 소홀**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해야 하지만, 건축공사 중 화강석 붙임 미시공, 전기공사 중 지중화 미시공, 통신공사 중 110 BLOCK 설계와 다른 제품 사용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설계변경 및 정산없이 대가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사항: 시정**

-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과다계상된 보조금 7,235,100원을 회수 조치하고 마을 자부담금 803,900원은 마을로 반환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